

[사 건 명] 행심 2017 - 19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고등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06. 0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 ◇◇◇◇는 △△△△고등학교 학생으로 같은 학교 학생인 ○○○, ㉠㉠㉠에 대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2017. 5. 2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결과 피청구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거 ○○○, ㉠㉠㉠에 대한 서면사과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7. 6. 1.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 2017. 6. 1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직접 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을 SNS에 초대했다는 이유로 집단폭행의 원인을 청구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과 관련 없는 일에도 집요하게 사과를 요구하고 조롱하고 욕을 한 ㉹㉹㉹와 선배에게 반말하고 욕설을 한 ○○○에게 서면사과 처분은 타당하지 않으며 특히 ㉹㉹㉹는 청구인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였고, 심지어 청구인은 사과를 하였는데도 계속된 사과를 요구하며 뒤따라와 집단폭행까지 하였는데 피해자인 청구인에게 가해자 처분 조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III.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동아리 단체대화방에서 ○○○이 기분 나빠하는 상황에 다른 입장에 서서 이야기 하다 ○○○이 ‘편들지 마셈’ 이라고 하니 이에 청구인이 ‘니 말투 줄라뽑다’ 라고 대응하였고, 이 말다툼이 ○○○의 기분을 상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는 점이 인정되며 결국 이 사안의 발단이 되었다.

나. 청구인은 단체대화방에 ▲▲의 친구들을 불렀는데, 이들이 ㉹㉹㉹와 ○○○에게 성적인 욕으로 공격하였고, 그 수위가 매우 높았으며, 다른 학생들을 크게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사태가 더 심

각해져 폭력의 피해를 당하게 된 상황이나 정황을 배제할 수 없다 판단하였고, 청구인이 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 친구들의 성적인 욕이 지속되었고, 이를 방관하여 사태를 키운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관계법령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

##### 2. 판 단

###### 가.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증거자료,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1) 청구인은 2017. 5. 1. ○○○이 포함된 수학동아리 단체카톡방에서 ○○○과 ■■■과의 대화속에서 청구인이 ■■■의 편을 드는 듯한 말을 하자, ○○○이 청구인에게 편들지 말라고 말하면서 서로 언쟁이 있었다.
- 2) 청구인은 2017. 5. 2. ㉠㉠㉠가 초대한 페이스북 단체채팅방에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 위 페이스북 단체채팅방에 ▲▲에 있는 청구인의 친구 2명을 초대하였고, 위 ▲▲ 친구 2명이 단체채팅방에서 ○○○과 ㉠㉠㉠에게 성적인 욕설 등을 하였고, 청구인은 ▲

▲의 친구들이 욕을 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다.

##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따돌림”이란 학교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위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직접 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을 SNS에 초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집단폭행의 원인을 청구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페이스북 단체채팅방에서 ▲▲ 친구들을 초대하기 전에 ㉹㉹㉹ 등으로 인신공격을 당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친구들을 초대할 경우에는 ▲▲ 친구들과 ㉹㉹㉹, ㉹㉹㉹ 등과의 사이에 좋지 않는 말들이 오고 갈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 친구들이 ㉹㉹㉹ 등에게 성적인 심한 욕설을 할 때에도 이를 전혀 말리지 않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비록 ㉹㉹㉹ 등에게 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친구들을 초대한 행위와 이후 페이스북에서 ▲▲친구들이

㉹㉹㉹ 등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말리지 않은 행위는 ㉹㉹㉹ 등  
에 대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만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  
다.

나) 청구인과 관련 없는 일에도 집요하게 사과를 요구하고 조롱하고  
욕을 한 ㉹㉹㉹와 선배에게 반말하고 욕설을 한 ○○○에게 서  
면사과 처분은 타당하지 않으며 특히 ㉹㉹㉹는 청구인에게 욕설  
과 협박을 하였고, 심지어 청구인은 사과를 하였는데도 계속된  
사과를 요구하며 뒤따라와 집단폭행까지 하였는데 피해자인 청  
구인에게 가해자 처분 조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서 피해자인 청구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과 ㉹㉹㉹에게 각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은 별도로 청구인의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바, 그에  
대한 양정을 살펴보면, 서면사과는 최소한의 처분이고,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의 처분 자체에 재량을 일탈, 남용하였  
다고 보여지지 않는 만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상의 폭행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